

관리비 자동이체 약관

제1조 약관의 적용

이 약관은 자동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하여 아파트,오피스텔,상가관리비(이하 “관리비”라 한다)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고객”이라 한다)와 고객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제2조 자동납부 방법

①은행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에 대하여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에서 지정하는 납부마감일에 통장 및 지급청구서나 거래처의 별도 지급청구 없이 출금하여 납부(이하 “자동납부”라 한다)합니다.

②자동납부의 개시는 관리비 납부일의 7영업일전까지 신청한 건에 한하여 신청월 당월 개시하며, 이후 신청분은 신청월의 익월부터 개시합니다.

제3조 납부자금 부족시 처리

①자동납부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부마감일 현재 출금을 청구하는 기관(이하 “이용기관”이라 한다)이 청구한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,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납부하지 않습니다.

②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

①관리비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부마감일 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.

②관리비 납부마감일에 수종의 자동이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우선 순위는 *별첨의 순서에 따릅니다.

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납부 모계좌가 타행인 경우는 관리비 이체정산을 위하여 18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개별 출금합니다.

제5조 신청내용의 변경 및 자동납부 해지

①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납부마감일의 전 영업일 영업시간내에 영업점 및 온라인채널(인터넷뱅킹,스마트폰뱅킹 등)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

②고객이 이용기관을 통해 해지(은행변경 포함)하여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동 내용을 통지 받은 경우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.

③관리비 자동이체 등록 후 6개월 연속 관리비 자동납부 이체실적이 없는 경우, 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 후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준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관련예금약관,계좌간 자동이체약관,은행과 이용기관과의 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를 적용합니다.

*별첨.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

- 1)요구불간 자동이체
- 2)여신상환
- 3)여신이자수입
- 4)하나카드자동이체
- 5)지로자동이체
- 6)CMS자동이체
- 7)CMS자동이체(당일출금)
- 8)아파트관리비(이지스엔터프라이즈)
- 9)월부금 자동이체
- 10)편뱅킹 자동이체
- 11)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
- 12)일일상환서비스 원금
- 13)일일상환서비스 이자

※CMS자동이체(당일출금)업무는 13시에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동이체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.

※편뱅킹 자동이체는 업체에서 출금의뢰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사정에 따라 자동이체우선순위가 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와 바뀔 수 있습니다.

※납부자 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 파일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20:00에 1회만 처리되며, 부분이체는 불가합니다.

※18시 이후 입금시 자동이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1년 1월 15일부터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